

(앞쪽)

제 호

축산물등급판정
검사공무원증

사 진
3cm×4cm
(모자 벗은 상반신으로
뒤 그림 없이 6개월
이내 촬영한 것)

성 명
기 관 명

60mm×90mm[보존용지(1종) 120g/㎡]

(색상: 연하늘색)

(뒤쪽)

축산물등급판정
검사공무원증

소속/직급:
성 명:
생년월일:

위의 사람은 「축산법」 제42조에 따라
축산물품질평가원에 대한 검사공무원임을
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농림축산식품부장관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
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

직인

1.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
없습니다.
2. 이 사람은 「축산법」 제42조에 따라 도
매시장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 및 도축장
의 경영자에 대하여 축산물등급판정업무
에 관한 질문을 하거나 시설과 서류 등을
검사할 권한이 있습니다.
3.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
넣어 주십시오.